

서울특별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 번호	1822
----------	------

발의년월일 : 2020년 8월 12일

발 의 자 : 홍성룡, 김화숙, 한기영, 강동길,
김기대, 김정태, 김제리, 김춘례,
박순규, 양민규, 유 용, 이광호,
이동현, 장상기, 황인구, 최웅식,
임종국 의원(17명)

1. 주 문

- 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나.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 동안 활동하되, 필요 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다.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2. 제안이유

- 광복 직후 구성된 “반민특위”가 붕괴되어 친일세력 청산이 미완에 그치고 친일세력이 대한민국 주도권을 장악하는 사태가 벌어짐으로써 민족정기가 올바르게 서지 못하고 국가 정체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음
- 일본은 대한제국 국권을 강탈하고 강제징용, 위안부 등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사과와 배상은커녕 역사를 왜곡하는 등 침탈행위를 계속하고 있음
- 국내 일각에서도 일본의 식민지배와 역사왜곡에 동조하고,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들을 폄훼하거나 모욕하는 행태까지도 보이고 있음
- 이는 단순한 역사 해석이나 학술활동의 문제가 아니라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등 전쟁범죄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공표한 「대한민국헌법」에 위배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
- 이에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는 우리 민족 삶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와 일본식 지명 및 명칭, 일제를 상징하는 조형물 등 일제 잔재를 온전히 파헤치고 완벽하게 청산하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서울특별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가.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대한민국은 헌법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으나,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친일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 사회 곳곳에 친일반민족행위 잔재들이 만연해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

광복직후 구성된 “반민특위”가 붕괴되어 친일세력 청산이 미완에 그치고 친일세력이 대한민국 주도권을 장악하는 사태가 벌어짐으로써 민족정기가 올바르게 서지 못하고 국가 정체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일본은 대한제국 국권을 강탈하고 군인·군속·노무자 등을 강제 징용하거나 부녀자들을 강제동원하여 성적 학대를 가하는 등 우리 민족을 억압·수탈하고 반인륜적인 전쟁범죄 행위를 자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야만과 폭력의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커녕 매년 A급 전범이 봉안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고 역사교과서를 날조하는 등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일본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이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국제여론전을 펼치는가 하면, 반도체 관련 핵심 소재 등에 대한 수출규제와 함께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경제침탈 전쟁을 시작했다.

국내 일각에서도 일본의 식민지배와 역사왜곡에 동조하고,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들을 폄훼하거나 모욕하는 행태까지도 보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역사 해석이나 학술활동의 문제가 아니라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등 전쟁 범죄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공표한 「대한민국헌법」에 위배되는 중대한 범죄이다.

우리는 이러한 범죄행위를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안 된다.

우리 민족 삶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와 일본식 지명 및 명칭, 행정용어, 무의식속에서 사용하는 순일본말, 일제를 상징하는 조형물 등 일제 잔재를 온전히 파헤치고 완벽하게 청산하여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야 한다.

이에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는 친일반민족행위 청산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한다.

2020. 8.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